

# 『璿源系譜紀略』英祖3年本 刊行過程考\*

A Study on the Process of Publishing *Sonwon-kyebo-kiryak*  
King Yeongjo's 3<sup>rd</sup> Year Edition

윤인현 (Yoon, In-Hyun)\*\*

## ◁ 목 차 ▷

- |                 |                |
|-----------------|----------------|
| 1. 緒言           | 4. 英祖3年本の 刊行過程 |
| 2. 史的 背景        | 5. 結言          |
| 3. 英祖1年本과 英祖2年本 |                |

## < 초 록 >

본고는 『璿源系譜紀略』 영조2년본과 영조3년본의 刊行過程을 밝힌 것이다. 영조2년본은 영조1년본의 ‘璿源世系’ 중 2張을 改張하여 跋文 追加 없이, 영조 2년 11월 초순에 시작하여 영조 2년 12월 초순에 완성하였다. 영조3년본은 王世子の 嘉禮를 계기로 영조 3년 10월 5일에 發意되어 11월 26일에 ‘선원세계’의 2張을 修正 改張하여 完成한 것이다. 그 刊行過程은 1. 建議와 許諾, 2. 校正廳 設廳, 3. 責任者 選拔, 4. 應行節目 마련, 5. 單子收集, 6. 施設補修, 7. 初草, 8. 中草, 9. 御覽正書, 10. 御覽, 11. 付板正書, 12. 板刻, 13. 印出, 14. 完成本 進上進獻, 15. 洗草, 16. 撤局이다. 跋文은 添附하지 않았고, 子孫錄의 修正事項은 改板 또는 補孔하였다.

要語: 선원계보기략, 선원보략, 목판인쇄술, 왕족, 족보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대진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oonih@daejin.ac.kr)

접수일: 2013년 12월 4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process orders of *Sonwon-kyebo-kiryak* Youngjo's 2<sup>nd</sup> Year Edition and 3<sup>rd</sup> Year Edition.

The 2<sup>nd</sup> Year Edition began on the beginning of November, 1726 and was completed on the beginning of December, about 1 month, modifying and changing 2 leaves without another epilog. It was published for presenting different glorious name for 3 queens.

The 3<sup>rd</sup> Year Edition began on October 5, 1727 and was completed on November 26, 1727, about 40 days modifying and changing 2 leaves without another epilog. It was published in commemoration of finishing Karye(嘉禮).

The whole process of publishing includes the following procedures: 1) making a recommendation of publishing and King's approval, 2) establishing Kyojeongcheong(校正廳), 3) electing chief executives, 4) making of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5) gathering genealogical records, 6) building and mending of facilities, 7) the first draft and review, 8) the second draft and review, 9) precise transcription for the king, 10) presenting precise transcription books to the king, 11) making the final transcription to be attached to the wood blocks, 12) engraving on the wood blocks, 13) the printing, 14) dedicating finished books to the king, 15) cleaning used papers, 16) the abolition of Kyojeongcheong(校正廳), in sequence. It was performed changing a few wood blocks or Bokong(補孔) in the Jasonrok(子孫錄).

Key words: *Sonwon-kyebo-kiryak*, *Sonwon-boryak*, wood block printing, royal family, genealogy

## 1. 緒言

「璿源系譜紀略」은 英祖朝 52(1724-1776)年間に 28回 重校補刊되었다. 그 중 영조1년본, 영조2년본, 영조3년본, 영조7년본까지 4種이 4冊本이고, 그 이후는 7冊本, 8冊本の 형태로 그 변화를 보인다.

영조1년본은 즉위년 10월 26일에 시작하여 元年 8월 28일에 간행을 완료했고,<sup>1)</sup> 그 追載 內容은 總敘(정조7년본 이후의 모든 판본)에 요약되어 있다.<sup>2)</sup> 영조2년본에 대하여도 “二年丙午 重校補刊 以大王大妃 王大妃尊號 端懿王后徽號之追載也”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대왕대비는 당시 생존하고 있던, 肅宗의 第2 繼妃 仁元王后, 王大妃는 景宗의 繼妃 宣懿王后이고, 端懿王后는 景宗 潛邸時 서거한 追尊王妃이다. 즉 仁元王后와 宣懿王后의 尊號, 端懿王后의 徽號를 追錄한 판본이 영조2년본인데 그 補刊 作業이 미미하여 이에 대한 儀軌가 없다.<sup>3)</sup>

영조1년본과 영조2년본은 그 실물이 傳存하지 않고, 영조3년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唯一本이 소장되어 있다. 영조1년본은 실물이 없어도 다행히 그에 따른 儀軌가 있어 그 간행과정을 밝힌 바 있으나<sup>4)</sup> 영조2년본은 그 儀軌가 없어 그 간행과정이 杳然하다.

영조3년본도 그 追載事項은 왕세자의 入學, 冠禮年紀와 세자빈의 誕降, 冊封年月日에 불과하지만, 이에 따른 儀軌가 존재하고 영조 3년 7월에 발생한 사화에 기인한 왕족들의 신분 변화가 散見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궁금하다.

이에 주로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당시의 史的인 배경을 살펴보고, 「丁未年

1) 윤인현, “「璿源系譜紀略」英祖1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第48輯(2011. 6), 316 참조.

2) 宗簿寺編, 『璿源系譜紀略』, 昭和 7年(1932). v.1 總敘 張2. “英祖元年乙巳秋八月 命璿源紀略 重校補刊 以景宗廟號諡號陵號之追載也 王大妃尊爲大王大妃 王妃尊爲王大妃之追載也 當宁即位年月日宮號門名軒號御眞 王妃進封年紀追載也 王世子誕降年月日宮號之追載也.”

3) 영조1년본과 영조2년본은 時差가 거의 없고 정치적 변고가 없었으니, 進上本과 進獻本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손록은 그대로 두고 여침만 수정하되, 숙종 제2 계비와 경종 비의 존호, 경종 추존비의 휘호만 추가 기록하여 극히 일부만 改板하여 간행했다.

4) 윤인현, “「璿源系譜紀略」英祖1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第48輯(2011. 6).

璿源系譜紀略修改時儀軌』와 『承政院日記』 등을 통해 영조3년본의 간행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史的 背景

本稿의 목적이 『璿源系譜紀略』 영조3년본의 간행과정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차례에 관련 의뢰가 없는 영조2년본 간행에 관한 사정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영조2년본은 영조 2년 12월 초에 완성되었는데, 이 영조2년본과 영조3년본의 간행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조1년본이 간행 완료된 영조 1년 8월 28일 이후부터 영조3년본이 완성된 11월 26일 사이의 사정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政治史的 背景이 肅宗 때와 연관되어 있어 肅宗 末期부터 그 사정을 대략 파악하고 약 4년간의 景宗代를 포함하여 英祖 3年 末까지의 흐름을 살펴본다.

숙종45년, 46년본이 간행될 당시에는 노론이 득세하고 있었지만 景宗이 즉위하자, 이미 폐위되어 사사되었던 景宗의 생모 장희빈의 名號와 爵號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趙重遇의 주장으로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재현된다. 일단은 洪啓迪의 반대와 노론 세력의 입김으로 趙重遇가 유배되었고, 이어 노론의 尹志述이 장희빈의 墓誌文에 治罪 事實의 기록이 없다 하여 그 작성자인 李頤命의 彈劾을 주장하였다.<sup>5)</sup>

景宗 元年에는 이런 와중에, 후일에 영조의 세자빈 부친이 되는 소론의 趙文命이 봉당의 폐해를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sup>6)</sup> 여전히 노론의 권세 아래에서 李廷燾가 建儲를 상소하여, 소론이 불참한 가운데 景宗은 8월에 延仍君을 王世弟로 책봉하기로 하였고, 이에 반발한 劉鳳輝에 대해 金昌集, 李健命, 洪啓迪 등이 주축이

5) 윤인현, “景宗朝 『璿源系譜紀略』 板本考,” 『杏簡尹泳大博士華甲紀念論文集』(1997. 11), 338 참조.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英祖1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48집(2011. 6) 294 참조.

6) 『朝鮮王朝實錄』 景宗 3卷, 1年(1721 辛丑) 5월 5일.

되어 엄벌을 주장하여, 趙泰耆의 변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劉鳳輝는 귀양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金一鏡이 金昌集, 李頤命, 李健命, 趙泰采 등 노론 4大臣을 논핵하여, 경종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4大臣이 유배되고 소론의 崔奎瑞, 崔錫恒, 趙泰耆 등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어 소론의 득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景宗 2년에 이르러서는 노론 측과 친분이 있던 地官 陸虎龍이 소론에 합세하여 노론 4大臣을 賜死에 이르게 하고, 소론의 政局 下에서 尹宣擧와 尹拯에 대한 復爵이 이루어졌다.<sup>7)</sup> 이때에 많은 인물들이 被禍한 점을 부각하여 이를 辛壬士禍라 부른다. 이후 景宗 3년 10월에 趙泰億의 발문을 실은 「璿源系譜紀略」, 경종3년본이 간행되었다.

이후에도 노론 측에서는 延仍君에게 힘을 실으려고 했었고, 이런 연유로 난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延仍君이 景宗의 崩御로 1724년 8월 30일에 즉위하였다. 英祖는 비록 노론 측의 비호를 받아왔지만 봉당의 폐해에 대해서는 潛邸時부터 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위년부터 ‘蕩平’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여, 신하들도 이에 관련하여 같은 용어를 자주 사용했으며,<sup>8)</sup> 소론의 척결에는 신중을 기하였다. 즉위년 9월 30일에 金一鏡을 弘文館提學으로 삼았으나<sup>9)</sup> 11월에는 削黜하였다가 絶島에 安置削黜하였다.<sup>10)</sup>

英祖 元年에는 2월의 乙巳換局<sup>11)</sup> 이후, 지난 날 賜死되었던 노론 4大臣이 復爵되어<sup>12)</sup> 노론의 득세 아래에서 8월 28일에 「璿源系譜紀略」 영조1년본이 간

7) 윤인현, “景宗朝 「璿源系譜紀略」 板本考,” 「杏簡尹泳大博士華甲紀念論文集」(1997. 11), 339-341 참조.

8) 「朝鮮王朝實錄」, 英祖 2卷, 卽位年(1724 갑진) 11월 11일, 14일, 27일, 12월 10일, 18일, 27일.

9) 「朝鮮王朝實錄」, 英祖 2卷, 卽位年(1724 갑진) 9월 30일.

10) 「朝鮮王朝實錄」, 英祖 2卷, 卽位年(1724 갑진) 11월 9일, 11일.

11) 영조의 즉위년에는 소론의 정권이 유지되고 있었다. 儒生 李義淵의 상소가 노론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으로 金一鏡 등의 처벌을 요청한 것이었으나 영조는 李義淵과 金一鏡 등을 모두 처벌하였다. 잠자시 노론의 지지를 받았던 터라, 당평의 명분으로 이러한 조처를 취했다가 영조 1년에 들어 承旨 尹鳳朝의 상소를 계기로 소론의 중진을 축출하고 鄭澐, 閔鎮遠, 李觀命을 임명한 것이다. 景宗朝의 辛壬黨禍의 獄事을 誣獄으로 규정하고 노론 4대신을 伸冤한 것을 乙巳處分이라 한다(이성무 지음, 「조선당쟁사 2」, (동방미디어, 2000), 146-148 참고). 소론정권에서 노론정권으로 전환되어 이를 乙巳換局이라 한다.

12) 「朝鮮王朝實錄」, 英祖 4卷, 1年(1725 을사) 3월 2일 3번째 기사.

행되었다. 이후 숙종 계비 仁顯王后의 오라버니인 閔鎮遠과 李觀命이 劉鳳輝를 討罪할 것을 주장하였고,<sup>13)</sup> 그를 討罪하지 않는 英祖에게 항의하는가 하면,<sup>14)</sup> 劉鳳輝, 李光佐, 趙泰耆, 趙泰億, 金堯鏡, 睦時龍 등의 治罪를 요구하고, 이미 벌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이 가벼우니 더 무거운 벌을 가해야 한다는 상소가 京鄕을 불문하고 빗발쳤다.<sup>15)</sup> 이에 英祖는 蕩平을 운운하며 신중을 기하였는데, 趙文命 등은 봉당타과를 주장하며<sup>16)</sup> 英祖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나, 그마저도 올바른 蕩平은 시비를 확실히 가리는 것이라는<sup>17)</sup> 주장에 밀리는 형국이였다. 뿐만 아니라 英祖도 소론이 봉당의 폐해를 주장하며 교묘히 소론을 변론하는 것에는 경계를 하였다. 특히 유봉휘에 대하여는 英祖 즉위 후부터 英祖 3년 4월에 죽기까지<sup>18)</sup> 끊임없는 討罪 요청이 있었다.

英祖 2년이 되자 討逆에 관한 논의가 더욱 빈발하였다. 左議政 閔鎮遠이 英祖 즉위년부터 소론의 逆臣들을 討罪할 것을 수차례 주장하여도 英祖가 듣지를 않자, 선봉에 서서 君臣間에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辭職을 청하였는데,<sup>19)</sup> 英祖가 이를 수락하여 이들 후 免職을 시키고 領中樞府事로 삼았다.<sup>20)</sup>

이때부터 掌令 成震齡이 부당함을 상소하였다가 폄천되고,<sup>21)</sup> 또 그를 옹호하여 大司諫 李箕翊과 正言 洪聖輔가 상소하였고,<sup>22)</sup> 右議政 洪致中도 閔鎮遠의 左議政 免職이 신하를 禮待하는 도리에 어긋난다는 상소를 하였다. 이에 영조는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겸사를 하면서도<sup>23)</sup> 여전히 討逆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어서 領議政 鄭滄가 閔鎮遠과 뜻을 같이 한다면서 辭職을 청하였고,<sup>24)</sup> 正言 洪鳳祚

13) 『朝鮮王朝實錄』 英祖 7卷, 1年(1725 을사) 9월 3일 3번째 기사.

14) 『朝鮮王朝實錄』 英祖 7卷, 1年(1725 을사) 9월 9일 1번째 기사.

15) 『朝鮮王朝實錄』 英祖 1년에 많은 기사가 산견된다.

16) 『朝鮮王朝實錄』 英祖 8卷, 1年(1724 을사) 10월 15일 1번째 기사.

17) 『朝鮮王朝實錄』 英祖 8卷, 1年(1724 을사) 10월 17일 1번째 기사.

18) 『朝鮮王朝實錄』 英祖 11卷, 3年(1727 정미) 4월 20일 5번째 기사.

19) 『朝鮮王朝實錄』 英祖 9卷, 2年(1726 병오) 1월 2일 3번째 기사.

20) 『朝鮮王朝實錄』 英祖 9卷, 2年(1726 병오) 1월 4일 2번째 기사.

21) 『朝鮮王朝實錄』 英祖 9卷, 2年(1726 병오) 1월 6일 3, 4번째 기사.

22) 『朝鮮王朝實錄』 英祖 9卷, 2年(1726 병오) 1월 8일 4번째 기사.

23) 『朝鮮王朝實錄』 英祖 9卷, 2年(1726 병오) 1월 11일 1번째 기사.

가 또다시 討逆이 엄하지 못하다고 상소하여도 英祖는 말이 많다고 하면서 묵살하였다.<sup>25)</sup> 이렇듯 英祖 2년의 年初 한 달 동안에 左議政, 右議政이 나서고 領議政까지 합세하여 건의하여도 英祖는 蕩平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분위기는 이어졌다. 左議政 李觀命을 비롯하여 掌令 任徵夏, 持平 李光運, 正言 柳謙明, 팔도의 유생 등도 閔鎭遠의 討逆 의도에 동조하는 상소가 계속되었으나<sup>26)</sup> 英祖는 자신의 氣質이 巽軟한 것이 병통이라 하면서도, 신하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 줄 것을 호소하였다.<sup>27)</sup> 이후로 토역의 상소가 다소 잦아들긴 했지만 노론의 소론에 대한 討罪 의지는 英祖 2년 내내 끊임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英祖 2년 7월 2일에 惠順慈敬大王大妃殿(仁元王后)의 尊號를 憲烈, 王大妃殿(宣懿王后)의 尊號를 敬純, 端懿王后의 徽號를 恭孝定穆이라 올렸다.<sup>28)</sup> 이로 인하여 英祖 2년 12월 초순에 「璿源系譜紀略」 영조2년본을 만든 것이다.<sup>29)</sup> 그 사이에 王室에서는 中宮殿의 冊封禮가 거행되었고,<sup>30)</sup> 때마침 翁主(和平翁主)를 생산한 後宮 李氏를 淑儀에 봉했다.<sup>31)</sup>

24) 『朝鮮王朝實錄』 英祖 9卷, 2年(1726 병오) 1월 20일 1번째 기사.

25) 『朝鮮王朝實錄』 英祖 9卷, 2年(1726 병오) 1월 21일 1번째 기사.

26) 『朝鮮王朝實錄』 英祖 2년 내내 閔鎭遠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상소가 있었다.

27) 『朝鮮王朝實錄』 英祖 10卷, 2年(1726 병오) 8월 3일 1번째 기사.

28) 『朝鮮王朝實錄』 英祖 10卷, 2年(1726 병오) 7월 2일 1번째 기사.

惠順慈敬大王大妃殿은 당시 생존하고 있던 肅宗의 제2 繼妃 仁元王后이며, 王大妃殿은 당시 생존하고 있던 景宗의 繼妃 宣懿王后이며, 端懿王后는 景宗의 첫 配偶者로 潛邸時에 逝去한 沈氏이다. 각각 尊號와 徽號를 올렸다는 것은 영조1년본의 ‘繼妃惠順慈敬大王大妃殿下金氏’를 ‘繼妃惠順慈敬獻烈大王大妃殿下金氏’로, 영조1년본의 ‘繼妃宣懿孝仁惠穆王大妃殿下魚氏’를 ‘繼妃敬純宣懿孝仁惠穆王大妃殿下魚氏’로, 영조1년본의 ‘妃端懿王后沈氏’를 ‘妃恭孝定穆端懿王后沈氏’로 고쳐 기재한 것이다.

29) 이 영조2년본의 진상의식은 영조3년 1월 26일에 있었다.

『承政院日記』(http://sjw.history.go.kr/. 이하 생략함) 英祖 3年 1월 24일. “同副承旨李重協, 以宗簿寺官員, 以提調意啓曰, 璿源譜略, 今月二十日, 改張進御事啓下, 而堂·郎不得備員, 改擇日舉行事, 允下矣. 令日官推擇, 則今二十六日爲吉云, 依前啓辭, 合部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30) 『朝鮮王朝實錄』 英祖 9卷, 2年(1726 병오) 10월 29일 1번째 기사.

31) 『承政院日記』 英祖 2年 11월 16일.

英祖 3년이 되어서도 간헐적으로 소론에 대한 노론의 공격이 있었다. 持平李膺이 趙泰億, 金一鏡에 대한 처분이 미진하다 하다가 하면,<sup>32)</sup> 領議政 鄭滸와 左議政 洪致中이 같은 날에 면직을 청한 것은<sup>33)</sup>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金鎭龜의 아들이며 壬寅年 獄事에 처벌된 金雲澤과 金民澤의 아우인 禮曹參議 金祖澤이 鄭滸와 洪致中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다, 그 도가 지나쳐 영조로부터 削奪官爵 門外出送 당하였다.<sup>34)</sup>

左議政 洪致中은 다시 遞職을 요청했고, 右議政 趙道彬이 辭職을 요구했으며, 李觀命도 落鄉하였다.<sup>35)</sup> 이어서 領議政 鄭滸도 거듭 辭職을 상소하였다.<sup>36)</sup> 이처럼 3 정승이 갈라들어 遞職과 辭職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노론의 소론을 척결하려는 의지가 강렬했음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명분 논리로는 英祖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이며, 소론을 討罪하지 않는 영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 속에서 英祖 3년 3월부터 왕세자의 嘉禮<sup>37)</sup>의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고<sup>38)</sup>와 3월 19일에 세자가 入學했으며,<sup>39)</sup> 세자빈 揀擇의 일은 5월에

32) 『朝鮮王朝實錄』 英祖 11卷, 3年(1726 정미) 1월 20일 3번째 기사.

33) 『朝鮮王朝實錄』 英祖 11卷, 3年(1726 정미) 2월 16일 3번째 기사.

34) 『朝鮮王朝實錄』 英祖 11卷, 3年(1726 정미) 10월 29일 1번째 기사.

35) 『朝鮮王朝實錄』 英祖 11卷, 3年(1726 정미) 2월 26일 1번째 기사.

36) 『朝鮮王朝實錄』 英祖 11卷, 3年(1726 정미) 3월 3일 1번째 기사.

『朝鮮王朝實錄』 英祖 11卷, 3年(1726 정미) 3월 26일 1번째 기사.

37) 私家の 嘉禮는 冠禮와 婚禮를 뜻한다. 王家의 경우는 婚禮, 冠禮, 登極 등 정치 儀式, 上尊號儀式, 冊封儀式, 각종 賀禮, 宴禮가 포함된다. 여기서는 왕세자의 婚禮로 먼저 금혼령을 내리고 세자빈을 간택을 진행하면서, 冠禮를 행한 후 세자빈을 親迎하고, 大殿과 中宮殿에 朝見禮를 하며, 왕세자가 宣政殿에서 朝謁하고, 임금이 仁政殿에서 賀禮를 받고 赦免令을 반포하였다. 仁政殿에서 納采禮, 納徵禮, 宜醮禮, 告期禮, 冊嬪禮, 醮戒禮를 날짜별로 행하고, 別宮에서 親迎禮를 행하였으며, 仁政殿에서 임금이 왕세자 가례에 대한 賀禮를 받고, 嘉禮 진행의 공로를 褒賞하였다.

38) 『朝鮮王朝實錄』 英祖 11卷, 3年(1726 정미) 3월 13일 2번째 기사.

왕세자 가례에 따른 금혼 규정은 그 범위를 諸道로 하고, 1. 國姓, 2. 世子의 異姓 8촌까지, 3. 王妃의 同姓 7촌, 異姓 6촌까지, 4. 異姓은 國姓과 本貫이 다른 사람, 5. 父母가 모두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 6. 後娶한 사람 등이 해당되었다.

39) 『朝鮮王朝實錄』 英祖 11卷, 3年(1726 정미) 3월 19일 기사.

시작되어<sup>40)</sup> 8월에 初揀擇<sup>41)</sup>과 再揀擇<sup>42)</sup>이 이루어지고, 왕세자의 冠禮<sup>43)</sup>도 진행되었다. 마침내 8월 28일에 三揀擇을 통해 趙文命의 딸이 세자빈으로 정해졌다.<sup>44)</sup> 趙文命이 누구인가? 그는 景宗朝나 英祖朝나 늘 朋黨의 弊害를 지적해 왔던 온건파 소론이다.

왕세자의 嘉禮와 세자빈의 揀擇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3월과 5월이었고 8월 말에 세자빈이 정해지는 사이에 정치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다.

劉鳳輝가 4월 20일에 타계했음에도<sup>45)</sup> 4월 24일 三司에서 劉鳳輝를 拏籍할 것을 諫하고, 이어 王敦의 律(剖棺斬屍)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시 諫하였고, 6월 10일에는 諸臣이 劉鳳輝등 五賊을 討罪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sup>46)</sup> 이후로도 누차의 요구가 있었고, 6월 29일에 司憲府에서 五賊에 대한 啓辭<sup>47)</sup>를 올렸다.<sup>48)</sup>

7월 1일이 되자 대단한 반전이 시작되었다. 英祖는 하루 전 入侍 때에 五賊에 대한 자신의 처분에 거역하는 신하들 중에 左議政 洪致中만 제외하고 右議政 李宜顯, 禮曹判書 申思詰, 左參贊 金興慶, 判尹 李乘常, 承旨 李瑜 그리고 司憲府, 司諫院, 弘文館의 諸臣의 罷職을 단행하였다.<sup>49)</sup> 또한 武人으로서 당수에 젓었다며 훈련대장 張鵬翼을 파직시키는가 하면, 領議政이었다가 英祖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領府事로 좌천되어 있던 鄭滯까지 파직시키고, 노론이 치죄를 요구해오던 李光佐를 領議政, 李台佐를 戶曹判書, 趙文命을 吏曹參議로 삼았다.

40) 『朝鮮王朝實錄』 英祖 11卷, 3年(1726 정미) 5월 23일 기사.

41) 『朝鮮王朝實錄』 英祖 12卷, 3年(1726 정미) 8월 9일 기사.

42) 『朝鮮王朝實錄』 英祖 12卷, 3年(1726 정미) 8월 19일 기사.

43) 『朝鮮王朝實錄』 英祖 3年 9월 9日(壬戌) 2번째 기사.

44) 『朝鮮王朝實錄』 英祖 12卷, 3年(1726 정미) 8월 28일 1번째 기사.

45) 『朝鮮王朝實錄』 英祖 11卷, 3年(1726 정미) 4월 20일 5번째 기사.

46) 『朝鮮王朝實錄』 英祖 11卷, 3年(1726 정미) 6월 10일 5번째 기사.

47) 論罪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

48) 『朝鮮王朝實錄』 英祖 11卷, 3年(1726 정미) 6월 29일 5번째 기사.

五賊은 경종조 노론 4대신을 賜死하게 한 壬寅獄事에 관련된 金一鏡의 上疏文에 연명한 다섯 인물로 추정된다. 실록의 기사 중에 ‘劉鳳輝 등 五賊’과 이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李眞儒, 朴弼夢, 李明諡 등이 포함된다. 노론측은 삼정승과 사헌부, 사간원 등 요직에 있으면서 소론 잔당을 극형에 처하자고 내내 주장해왔으나, 영조는 번번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49) 『朝鮮王朝實錄』 英祖 12卷, 3年(1726 정미) 7월 1일 6번째 기사.

또한 趙泰億을 門外黜送에서 放免하여 職牒을 돌려주어 敍用하고, 李鳳祥을 御營大將으로 임명하고, 都承旨, 吏曹判書, 兵曹判書, 持平, 正言, 承旨, 副校理, 修撰, 掌令, 獻納 등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고,<sup>50)</sup> 이들 사흘 후에는 劉鳳輝의 官職까지 追復하고, 鄭澐를 削奪官爵하고 門外出送하였으니, 이른바 丁未換局이다. 英祖는 蕩平을 실현하고 봉당의 폐해를 없애고 정치적 안정을 구하려 하였다. 노론의 지속적인 소론 잔당 제거 논의에 蕩平政策으로 정국의 안정을 기하려던 英祖의 심기는 즉위한 지 3년 동안 내내 불편하였던 것이다.

소론의 정국으로 변환된 이후 8월 28일에 세자빈의 揀擇이 趙文命의 여식으로 정해진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왕세자의 嘉禮가 진행되어 9월 9일에는 왕세자의 冠禮를 행하고<sup>51)</sup> 9월 29일에 왕세자가 별궁에 나가 親迎禮를 행하고,<sup>52)</sup> 다음 날 10월 1일에 英祖가 仁政殿에서 백관의 하례를 받음으로써<sup>53)</sup> 嘉禮가 끝났다.

이를 계기로 宗簿寺에서 英祖 3년 10월 18일에 「國祖御牒」과 「璿源系譜紀略」의 수정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璿源系譜紀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李光佐가 영조2년본에서 乙巳換局 후의 追奪된 인물의 職名을 洗補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不許한<sup>54)</sup> 채로 英祖 3년 11월 말에 「璿源系譜紀略」 영조3년본이 완성되었다.

요컨대 「璿源系譜紀略」의 숙종45, 46년본은 노론의 정권하에서 간행되고, 경종 원년에도 노론의 위세가 유지되다가 金一鏡의 상소로 노론 4大臣이 실각함으로써 소론의 정권으로 넘어 갔고 경종2년에 이르러서는 노론 4大臣이 賜死되었으며, 景宗 3년에는 소론의 득세 하에 「璿源系譜紀略」 경종3년본이 간행되었다.

英祖가, 景宗 4년이며 英祖 즉위년인 1724년 8월 말일에 즉위하여 蕩平政策을 펴는 가운데 원년 2월에 乙巳換局으로 노론의 정권이 수립되고 8월 28일에 「璿源系譜紀略」 영조1년본이 간행되었다. 英祖 2년에 노론측이 피화된 소론 측을 더욱

50) 「朝鮮王朝實錄」 英祖 12卷, 3年(1726 정미) 7월 1일 4, 8, 9, 10, 11, 12, 14번째 기사.

51) 「朝鮮王朝實錄」 英祖 13卷, 3年(1726 정미) 9월 9일 2번째 기사.

52) 「朝鮮王朝實錄」 英祖 13卷, 3年(1726 정미) 9월 29일 2번째 기사.

53) 「朝鮮王朝實錄」 英祖 13卷, 3年(1726 정미) 10월 21일 1번째 기사.

54) 「朝鮮王朝實錄」 英祖 14卷, 3年(1726 정미) 11월 25일 6번째 기사.

엄중히 討逆하라는 주장이 빈발하고, 英祖는 蕩平의 主觀으로 소론의 피해를 저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12월 初旬에 「璿源系譜紀略」 영조2년본이 완성되었고, 소론에 대한 노론의 지나친 공격에 英祖는 蕩平을 실현하여 봉당의 폐해를 없애고 정치적 안정을 구하려 하였다. 즉 英祖 3년 7월부터 改閣을 단행하여 노론 세력이 몰락하고 소론 세력이 부상하는 丁未換局을 실행하였다. 이후에 소론의 정권 하에서 英祖 3년 11월 말에 「璿源系譜紀略」 영조3년본이 완성된 것이다.

### 3. 英祖1年本과 英祖2年本

肅宗5年本인 시간본 이후로 처음으로 4책본으로 간행된 것이 己亥本이다. 이 己亥本이라는 명칭은 儀軌 상에서 종종 숙종46년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해년인 숙종 45년에 간행하여 진상의식까지 마친 것에 미세한 改張을 하여 숙종 46년에 완성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이들을 숙종45년본과 숙종46년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숙종46년본이 간행된 이후 약 3년만에 景宗3년본을 간행하였는데, 매우 그렇듯이 이 두 판본도 각각 진상진헌본과 봉안본과 반사본이 있다. 진상진헌본은 임금과 세자 또는 세제에게 올려지는 것이고, 봉안본은 外四處라고 칭하는 4 史庫의 璿源閣과 宗簿寺에 보관되는 것이며, 반사본은 朝臣과 宗班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영조1년본은 간행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인 英祖 원년 2월에 乙巳換局이 일어나, 소론의 많은 인물들이 처벌된 사실과 지난 날 賜死되었던 노론 4大臣이 復爵된 사실 외에 被禍되었던 노론 측 인물들의 復爵된 사실을 기재하기 위해, 校正廳을 설치하고 많은 수정을 거치고 李宜顯의 跋文을 실어 간행하였다.

다시 말해, 과거에 반사되었던 숙종46년본 55건을 회수하여 洗草해버리고, 영조1년본 新件으로 반사하였고, 景宗3년본 155건을 회수하여 개장해서 환급했으며, 進上進獻件 25건과 頒賜本 200건으로 모두 435건을 간행했다.<sup>55)</sup>

영조2년본은, 영조1년본이 영조 원년 8월 28일에 노론의 세력 하에 간행된 후 노론 소론의 정권 변화가 없는 가운데 간행되었고, 그간에 대대적인 士禍가 없었기에 수록된 인물의 신분 변화는 왕실에만 한정되었다. 당시의 왕실의 주요 인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숙종, 경종, 영조, 진종, 장조 및 그 배우자들의 생몰연기와 향년

묘호	배우자	탄강연기	승하연기	향년	비고
肅宗		현종2년 8월	숙종46년	60세	
	仁敬王后	현종2년 9월	숙종6년 10월	20세	
	仁顯王后	현종8년 4월	숙종27년 8월	35세	
	仁元王后	숙종13년 9월	영조33년 3월	71세	* 영조2년시 생존
	玉山府大嬪		숙종27년 10월		賜死
	淑嬪좌씨		숙종44년 3월		
	禔嬪바씨		숙종29년 7월		
景宗		숙종14년 10월	경종4년	37세	
	端懿王后	숙종12년 5월	숙종44년 2월	33세	
	宣懿王后	숙종31년 10월	영조6년 6월	26세	* 영조2년시 생존
英祖		숙종20년 9월	영조52년 3월	83세	
	貞聖王后	숙종18년 12월	영조33년 2월	66세	* 영조2년시 생존
	貞純王后	영조21년 11월	순조5년 정월	61세	영조33년 왕비 책봉
眞宗		숙종45년 2월	영조4년 11월	10세	* 영조2년시 생존
莊祖		영조11년 정월	영조38년 윤5월	28세	

즉 英祖 2년 7월 2일에 仁元王后와 宣懿王后에게 尊號를, 端懿王后에게 徽號를 올린 사실을 추가 기재한 것이다. 仁元王后(大王大妃)는 당시 생존하고 있던 肅宗의 第2 繼妃이고, 宣懿王后(王大妃)는 당시 생존하고 있던 景宗 繼妃이며, 端懿王后는 景宗 潛邸時에 서거한 追尊王妃이다. 이를 景宗3년본에서의 칭호를 참고로 보이면서 영조1년본과 영조2년본의 칭호 변화를 알기 쉽게 표화하면 <표 2>와 같다.

55)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英祖1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第48輯(2011. 6), 315-316.

<표 2> 「璿源系譜紀略」경종3년본, 영조1년본, 영조2년본의 ‘璿源世系’ 변화 비교

	身分	당시의 간칭	경종3년본의 칭호	당시 생존 여부
			변경 전 칭호(영조1년본)	
			변경 후 칭호(영조2년본)	
仁元王后	肅宗 第2 繼妃	대왕대비	繼妃惠順慈敬 王大妃殿下金氏 繼妃惠順慈敬 大王大妃殿下金氏 繼妃惠順慈敬獻烈大王大妃殿下金氏	생존
宣懿王后	景宗 繼妃	왕대비	繼妃 殿下魚氏 繼妃 宣懿孝仁惠穆王大妃殿下魚氏 繼妃敬純宣懿孝仁惠穆王大妃殿下魚氏	생존
端懿王后	景宗 妃	단의왕후	妃 端懿王后沈氏 妃 端懿王后沈氏 妃恭孝定穆端懿王后沈氏	경종 잡저시 서거

‘子孫錄’에는 변화가 없고, ‘璿源世系’ 상의 세 왕비의 간단한 稱號 변경을 함에 있어서 대대적인 간행 작업은 불필요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儀軌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承政院日記의 英祖 2년 11월 2일조를 보면 宗簿寺 官員 金祖澤이 宗簿寺 提調의 뜻으로, 세 왕후에게 尊號와 徽號를 올린 것에 대하여 「璿源系譜紀略」을 수정하여 宗簿寺와 外四處에 봉안해야 하는데 진상진헌건과 반사건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지를 英祖에게 문의하였다. 이에 英祖는 進獻件도 개장만 하라고 하였다.<sup>56)</sup>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進上件과 進獻件만 修正하되 改張만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영조의 대답의 ‘진헌건만 개장하라’는 것이 진상건은 전질을 인쇄하고 진헌건만 개장하라는 뜻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사흘 후에 다시 英祖에게 확인한 결과 進獻件이라 말한 것은 進上件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일렀다.<sup>57)</sup> 결국 진상건과

56) 「承政院日記」英祖 2年 11月 2日(庚寅). “金祖澤, 以宗簿寺提調意啓曰, 大王大妃殿·王大妃殿下尊號, 端懿王后追上徽號, 國朝御牒及璿源譜略中, 依例修正, 本廳與外四處, 次第奉安, 而璿源譜略進上進獻及頒賜件, 亦爲一體修正, 何如? 傳曰, 依啓. 進獻件, 亦爲只改張.”

57) 「承政院日記」英祖 2年 11月 5日(癸巳). “金祖澤, 以宗簿寺官員, 以提調意啓曰, 尊崇行禮後, 璿源譜略, 依例修正事, 入啓允下, 而進獻件, 亦爲只改張事, 命下矣. 進上件, 依前以

진헌건만을 改張하게 한 것이다. 英祖 2년 12월 3일에는 宗簿寺 官員 李箕翊이 提調의 命를 받고 英祖에게 발문작성 여부를 물었는데, 발문은 짓지 말라 하였다.

영조1년본의 進上本과 進獻本만을 대상으로 ‘璿源世系’ 제30張과 제31張의 2張만 修正 刊印하여 改張한 것이 영조2년본이다. 이 판본이 英祖 2년 12월 초순에 완성되고, 進上儀式<sup>58)</sup>은 英祖 3년 1월 26일에 있었다. 이를 가지고 영조 3년 11월 26일에 영조3년본으로 다시 수정 개장하였기에, 이 판본은 현재 실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요컨대 『璿源系譜紀略』 영조2년본은 英祖 2년 11월 초순에 發意되어 英祖 2년 12월 초순에 완성되고 英祖 3년 1월 26일에 진상의식을 마쳤는데, 영조1년본의 進上本과 進獻本만을 대상으로 ‘璿源世系’ 중 2張만 다시 刊印하여 개장하고, 발문은 추가하지 않고 간행한 판본으로 그 실물을 볼 수가 없다.

#### 4. 英祖3年本の 刊行過程

영조3년본의 간행 건의는 英祖 3년 10월 5일에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 해 11월 26일 진상의식을 치름으로써 완성이 되었으니 그 소요시간은 약 1개월 반이다.<sup>59)</sup>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지만 그 일에는 순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아니 하였다.

『璿源系譜紀略』의 간행과정의 순서는 始刊된 이후 수차례의 간행 경험으로 일정한 순서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두고, 필자는 肅宗, 景宗朝에 간행된 『璿源系譜紀略』의 간행과정을 살펴, 정형적인 간포봉안의 순서를 밝힌 바 있다.<sup>60)</sup> 그 순서는 1) 建議와 許諾, 2) 校正廳 設廳, 3) 責任者 選拔, 4) 應行節目 마련,

全帙印進, 而進獻件, 只改張以入乎? 敢稟。傳曰, 進獻之中, 進上件, 亦在矣, 一體舉行。”  
58) 『承政院日記』, 英祖 3年 1월 24日(辛亥).

59) 간행에 대한 첫 발의가 10월 5일이지만, 확실한 거행조건이 정해지지 않아서 영조의 확답을 받은 것이 10월 11일이다.

60)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刊布奉安의 順序 定型考” 『書誌學研究』 제55집(2013. 9)

5) 單子收集, 6) 作業分房, 7) 業務分掌, 8) 施設補修와 警備, 9) 單子考校, 10) 初草, 11) 中草 및 校正, 12) 御覽正書, 13) 御覽正書本 粧績, 14) 御覽正書本 進上, 15) 付板正書, 16) 板刻, 17) 印出, 18) 粧績, 19) 完成本 進上進獻, 20) 進箋, 21) 洗草, 22) 撤局, 23) 褒賞, 24) 頒賜, 25) 奉安 등으로 요약되는데, 본고에서는 영조3년본의 간행 작업이 매우 작은 규모라서 무관한 것과 그 기록이 없는 것은 생략하고, 즉 建議와 許諾, 校正廳 設廳, 責任者 選拔, 應行節目 마련, 單子收集, 施設補修, 初草 中草 및 跋文作成, 中草御覽(御覽正書本 進上), 付板正書, 板刻, 印出, 完成本 進上進獻, 洗草, 撤局 등의 그 刊行過程을 살펴보고자 한다.

#### 4.1 建議와 許諾

英祖 3년 10월 5일, 당시 宗簿寺 提調를 담당하던 右議政 沈壽賢이 王世子の 嘉禮가 있는 후 國祖御牒과 璿源譜略을 修改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영조는 경비를 고려하여 進上件만 改張하되 當宇의 子孫錄만 修改하도록 명하였다.<sup>61)</sup>

주된 수정내용은 王世子の 책봉 이후에 발생한 그의 신분변화 즉 嘉禮를 마치기까지의 世子の 入學,<sup>62)</sup> 冠禮,<sup>63)</sup> 表德,<sup>64)</sup>과 嬪宮의 冊封年紀,<sup>65)</sup> 誕生年月日干支 및 坊名,<sup>66)</sup> 그리고 때마침 출생한 新生翁主에 관한 기록 즉 그 생모의 爵號<sup>67)</sup>

61)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 丁未 10월 12日條(이 자료는 필사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奎14020~14022 중의 奎14022이다. 張次가 없어 마이크로자료의 張次로 대신하고, 해당 年月日은 ‘년’은 해당자료의 干支를 그대로 따르고, 月日을 아라비아 숫자로 고쳐 적는다. 以下同).

「承政院日記」英祖 3年 10월 5日(丁亥). 沈壽賢의 최초 말의 날짜는 10월 5일이다.

62) 「朝鮮王朝實錄」英祖 3年 3月 19日(丙午) 1번째 기사

63) 「朝鮮王朝實錄」英祖 3年 9月 9日(壬戌) 2번째 기사

64) 禮曹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世子の 表德은 ‘聖敬’이다. 「璿源系譜紀略」英祖3年本の ‘璿源世系’를 보면 “王世子邸下 … 字聖敬”이라 되어 있어, 여기서의 表德은 ‘字’를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65) 「璿源系譜紀略」영조3년본의 ‘璿源世系’를 보면 “丁未冊封世子嬪行嘉禮於於義洞本宮 <孝宗潛邸>”로 되어 있다.

66) 「璿源系譜紀略」영조3년본의 ‘璿源世系’를 보면 “乙未<肅宗四十一年>十二月十四日丙

이었다.

## 4.2 校正廳 設廳

대개 간행 작업의 규모가 크면 교정청을 설치하고, 작으면 종부시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 판본의 간행은 그 작업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행의 허락이 난 지 6일이 지난 즈음에 宗簿寺는 세 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설청을 요청하였다.

첫째, 王世子 定字<sup>68)</sup>와 嬪宮의 冊封은 그 의미가 至重且大하여 設廳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둘째, 所要되는 物資의 量도 設廳의 與否와는 별 관계가 없으며, 셋째, 句管堂上 校正官 등의 관리가 소속된 官廳이 없으면 업무를 추진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英祖는 校正廳 設廳을 허락하였다.<sup>69)</sup>

## 4.3 責任者 選拔

필자는 肅宗 景宗朝 板本の 간행과정을 살피면서 都提調는 諮問役이고 提調를 責任者로 판단하였다.<sup>70)</sup> 宗班 중에 譜法에 능통한 자가 句管堂上 1명과 校正官 2명을 차출하여, 宗簿寺의 堂郎과 함께 修正 작업을 管掌하기로 하였는데,<sup>71)</sup> 句管堂上으로는 密昌君 楫이, 校正官으로는 西城都正 焯과 行韓豐副正 杵이 차출되었다.<sup>72)</sup> 그러면 提調는 누구인가? 숙종45, 46년본의 간행시에 句管堂上을 맡았고 경종3년본과 영조1년본 간행에 提調를 맡았던 礪城君 楫이 1提調였으며,

---

子 誕降于崇教坊私第”로 되어 있다.

67) 新生翁主의 母는 李氏이며, 당시의 작호는 淑儀였다. 그래서 『璿源系譜紀略』 英祖3年本の ‘璿源世系’를 보면 “三女<淑儀李氏出>”로 되어 있다.

68) ‘定字’는 ‘字를 定한다’는 뜻으로 보아, 表德을 이르는 것으로 추측됨.

69)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 (奎14022) 張 5. 丁未 10月18日條.

70)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刊布奉安의 順序 定型考,” 『書誌學研究』 제55집(2013. 9), 126.

71)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 (奎14022) 張 1-2. 丁未 10月13日條.

72)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 (奎14022) 張 2-3. 丁未 10月13日條.

禮曹判書 李堉이 2提調였다.<sup>73)</sup> 李堉은 德水 李氏이니 보법에 능통한 宗班이란 礪城君 楫이다.

그리고 이 영조3년본의 간행을 처음 건의한 沈壽賢이 宗簿寺 提調이니 提調는 3명이고, 都提調는 없으며, 沈壽賢은 행정상의 형식적 提調이고, 礪城君 楫과 禮曹判書 李堉이 실무적인 提調이며 특히 礪城君 楫이 가장 실무적 責任者로 보인다.

#### 4.4 應行節目 마련

應行節目이란 간행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한 規定으로 대개 單子收集, 人力需給, 物資需給에 대한 지침인데, 이 영조3년본 간행과정에서는 單子收集의 개념은 희박하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本廳 堂上 郎廳이 쓸 印信 각 1顆를 該曹로 하여금 給送하게 할 것.
- 2) 堂上 郎廳 校正官의 祭官 임명을 보류하고 모든 公會에 참여하지 않고, 服制式暇<sup>74)</sup> 외에는 공무를 수행하게 할 것.
- 3) 本廳 堂上은 격일로 출근하고, 都廳, 校正官은 매일 출근하고, 매월 말일에 出缺 單子를 아뢰도록 할 것.
- 4) 書吏, 庫子, 使令 등은 宗簿寺 員役으로써 兼察하게 하고, 守直軍士 1명, 茶母 1명을 該曹로 하여금 일을 마칠 때까지 定送하게 할 것.
- 5) 書寫忠義衛 1人是 전례에 따라 冠帶常仕<sup>75)</sup>하게 하되 本寺의 忠義衛가 거행하게 할 것.
- 6) 필요한 板子는 前例에 따라 該司로 하여금 進排하게 하고, 公事白休紙은 매월 2斤씩, 黃筆 5 柄, 眞墨 5丁을 각 該司로 하여금 進排하게 할 것.

73)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24. 丁未 11月17日條 참조.

74) 服制란 喪服의 제도이고, 式暇란 규정된 휴가이다. 복제식가란 상을 당하여 휴가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5) 冠帶란 ‘관디’로 벼슬아치들이 입는 公服이며, 常仕란 常勤이다. 冠帶常仕란 官服을 입고 常勤한다는 뜻으로 판단된다.

- 7) 冊子에 드는 紙地, 筆墨과 모든 필요한 물건 및 鋪陳 等物을 전례에 따라 필요한 만큼 넣어 주도록 각 該司로 하여금 進排하게 할 것.
- 8) 미진한 條件은 追後에 마련함.

각 판본의 간행에 응행절목이 정해질 때마다 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개 紙筆墨과 板子 및 鋪陳 등의 供給, 堂上 郎廳 과 校正官의 公會不參과 祭官任命 除外, 堂上은 隔日出勤, 都廳과 校正官은 每日出勤, 每月 末日에 出勤與否 單子를 提出하는 등에 관련하여 大同小異한 節目들이 규정되어 있다.

#### 4.5 單子收集

영조3년본 간행에 있어서는 왕실의 왕세자 冠禮와 세자빈 冊封에 따른 신분 변화와 新生翁主 追錄과 丁未換局 이후 소론의 復爵과 노론의 被禍에 따른 신분 변동 사항 수집이 주류를 이룬다. 즉 첫째는 王世子와 世子嬪 관련사항, 둘째는 新生翁主 관련사항, 셋째는 자손록의 신분변동 사항이다.

첫째 王世子와 世子嬪 관련사항의 수록은 이 판본의 근본적인 간행 목적이다. 왕세자인 孝章世子<sup>76)</sup>는 英祖 즉위년에 敬義君으로 봉해졌고 英祖 원년에 王世子로 冊封되어<sup>77)</sup> 그 기록이 이미 영조1년본과 영조2년본에 수록되어 있었다. 英祖 3년 3월의 入學 사실과 9월의 冠禮 사실 및 表德이 수집 대상이었고, 세자빈은 誕生 年月日 干支 및 誕生 坊名, 冊封年紀 그리고 그의 부친 都承旨 趙文命의 居住 坊名, 姓貫 등이 수집 대상이었다.

둘째는 新生翁主에 관한 사항이다. 英祖 3년 5월 5일 이전에 태어났다. 景宗3년본 간행당시 英祖는 왕세제의 신분이었고 그 자녀는, 世弟嬪 徐氏에게는 後嗣가 없었고 昭訓 李氏(후일의 靖嬪)에게 1남 2녀가 있었다. 그 1男은 후일의 眞宗이고 제1녀는 조졸하였으며 제2녀는 후일의 和順翁主<sup>78)</sup>이다. 英祖가 즉위한 이

76) 『朝鮮王朝實錄』 英祖 4年 11月 16日(壬戌) 1번째 기사. 왕세자가 昌慶宮에서 薨逝하였다. 孝章世子는 薨逝 이후의 호칭으로 당시에는 王世子로 칭했다.

77) 『朝鮮王朝實錄』 英祖 1年 2月 25日(丙午) 1번째 기사.

후 제3녀가 출생하였는데, 英祖 3년 5월 5일에 영조가 新生翁主<sup>79)</sup>房에 전담과 노비를 和順翁主房의 例로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sup>80)</sup> 것으로 보아 「璿源系譜紀略」 영조2년본 간행과 영조3년본 간행 사이에 출생하였기에 이를 수록해야 했다. 당시의 영조 배우자와 그 자녀 사항을 표화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영조의 배우자와 그 자녀 사항

묘호	자녀수	배우자	자녀수	자녀의 출생 순서
영조	2남 12녀	妃 貞聖王后 徐氏	無嗣	
		繼妃 貞純王后 金氏	無嗣	
		後宮 靖嬪 李氏	1남2녀	제1남 眞宗, 제1녀 조졸, 제2녀 和順翁主
		後宮 暎嬪 李氏	1남6녀	제2남 莊祖, 제3녀 和平翁主, 제4녀 조졸 제5녀 조졸, 제6녀 조졸, 제7녀 和協翁主 제9녀 和緩翁主
		後宮 貴人 趙氏	2녀	제8녀 조졸, 제10녀 和柔翁主
		後宮 淑儀 文氏	2녀	제11녀 和寧翁主, 제12녀 和吉翁主

이 제3녀 新生翁主가 후일의 和平翁主이다. 이와 관련하여는 生母 李氏의 爵號가 수집 대상이었다.

셋째 자손록의 신분변동 사항은 그 수집과정에 있어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다.

영조는 進上件<sup>81)</sup>만 改張하되 자신의 자손록 즉 첫째와 둘째에 관련된 사항만 修改하라 하였는데,<sup>82)</sup> 이를 수정하면 行數과 張數가 차례로 밀려나서 新板이 약 30餘 板이 되고 小註 속의 참조표시인 ‘見某’字 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英祖는 경비를 절감하고 싶었지만 이를 修改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였다.<sup>83)</sup>

78) 「朝鮮王朝實錄」英祖 1年 2月 18日(丙午) 5번째 기사. “封王女爲和順翁主.”

79) 「承政院日記」英祖 7年 7月 20日(辛巳). “傳曰 翁主爲和平翁主.”

80) 「承政院日記」英祖 3年 5月 5日(辛巳). “傳于李端章曰 新生翁主房田畝奴婢及舉行等事 依和順翁主房例 舉行事 分付該曹該院.”

81) 임금께 올리는 것을 進上件 또는 御覽件이라 하고,世子나 世弟께 올리는 것을 進獻件 또는 徽覽件이라 한다. 이들을 때에 따라서는 進上用, 御覽用, 進獻用, 徽覽用이라 칭하기도 한다. 여기서 進上件이란 進上件과 進獻件을 아울러 말한 것으로 보인다.

82)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 丁未 10月12日條.

심지어 行數가 차례로 밀리어 한 板을 새로 판각하는 경우라도 罪死 復爵 인물에 대하여 어떤 것은 고치고 어떤 것은 그대로 두면 일관성이 없다 하여 그 변동사항을 고치지 말라 하였다.<sup>84)</sup>

그런데 11월 13일 尹淳이 宗簿寺 提調 沈壽賢을 대신하여 건의하였다. 時任大臣 중에 과거에 治罪되어 舊板에 爵號를 지우고 ‘及第’라고만 기재했다가, 大處分이 있는 후 현재에는 이미 贈職을 돌려받은 자가 있는데,<sup>85)</sup> 이런 것들을 모두 實際에 따라 改正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英祖가 우려하는 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全板을 모두 고치면 물자와 인력이 많이 들지만 頒賜件을 거두어서 洗補한 전례가 있다 하고, 그 功力이 하루 이틀에 불과하다고 설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조는 御牒<sup>86)</sup>만 改張하고 다른 것을 고칠 필요가 없다 하고, 단지 爵秩을 고칠 만한 것은 洗補하는 것만 허락하는 것으로 그 뜻을 분명히 했다.<sup>87)</sup>

그 날로부터 교정청에서는 禁府에 丙午(영조 2, 1726) 이후의 罪死, 罪謫 및 處分仍置之類를 뽑아 보내 달라 하였고,<sup>88)</sup> 吏曹에 贈職, 贈諡, 削職, 復官爵의 人員을 일일이 적어 보내 달라 하였으며,<sup>89)</sup> 兵曹에는 丙午 이후 武臣 중에 罪死, 罪謫, 復官爵, 削黜된 人員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여<sup>90)</sup>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는 英祖의 엄명으로 다 활용되지 못하였다.

#### 4.6 施設補修

이 관본의 간행 시작이 10월 중순이었기에 이미 동절기에 들었다. 간행작업을

83) 『丁未年 瑤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2. 丁未 10月13日條.

84) 『丁未年 瑤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0. 丁未 10月27日條.

85) 여기의 時任大臣은 바로 領議政 李光佐이다. 乙巳換局 이후 영조 1년 7월 4일 削奪官爵되어 영조2년본에 그의 小註에 ‘及第’라고만 되어 있었다. 이에 復爵 기록을 넣자는 건의였다.

86) 御牒이란 『瑤源系譜紀略』 중의 ‘列聖繼序之圖’, ‘瑤源先系’, ‘瑤源世系’를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瑤源世系’를 지칭한다.

87) 『丁未年 瑤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4. 丁未 11月15日條.

88) 『丁未年 瑤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5. 丁未 11月15日 禁府了條.

89) 『丁未年 瑤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5. 丁未 11月15日 吏曹了條.

90) 『丁未年 瑤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5. 丁未 11月15日 兵曹了條.

위한 施設로 工匠 등이 거처하는 土宇 5칸을 마련하고, 土宇의 窓遮雨에 쓸 窓戶紙,<sup>91)</sup> 大芘, 遮竹을 요청<sup>92)</sup>하는가 하면 各色 工匠 등이 작업하기 위해 土宇에 깔 空石 網席을 신청했다.<sup>93)</sup> 그 외 書吏 등이 거처할 假家 2칸을 만드는 것이 고작이었다.

#### 4.7 初草, 中草와 跋文作成 與否

英祖 3년 10월 12일에 간행 허락을 받고, 13일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제1일에는 1) 왕세자, 세자빈, 신생옹주에 관한 자료 요구, 2) 句管堂上, 校正官 확보, 3) 회의개최에 필요한 물품 신청, 4) 初草用 白紙, 中草御覽件用 楮注紙 신청 등이 있었다.<sup>94)</sup> 첫 날부터 中草御覽用 楮注紙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그 작업이 간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初草와 中草가 진행되면서 제7일 10월 19일에 刻手<sup>95)</sup>와 小木匠의 필요 물자를 신청한<sup>96)</sup> 것으로 보아 바로 板刻에 들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서두르고 있었다.

제15일 10월 27일에는 跋文 製進 與否의 문의를 있었는데 英祖는 跋文은 主文之臣을 시켜 지어라고 명했다.<sup>97)</sup> 하지만 제31일이 되는 11월 13일에 大提學 尹淳이 아뢰기를, 跋文을 지어야 한다면 자신이 主文堂上이어서 製進해야 하지만, 기존 판본들의 跋文이 있는 것은 모두 임금과 직접 관련이 있었고, 이번에는 왕세자의 가례 기념으로 간행하는데, 그 전례가 없다고 했다. 이에 英祖는 발문을 짓지 말라 하고, 임금과 직접 관련이 있어 지었다 하더라도 跋文의 수가 많으니 앞으로는 跋文을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sup>98)</sup>

91)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7. 丁未 10月19日條.

92)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7. 丁未 10月22日條.

93)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4. 丁未 10月16日條.

94)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3. 丁未 10月13日條.

95)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6. 丁未 10月19日條.

96)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6. 丁未 10月19日條.

97)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7. 丁未 10月27日條.

98) 「承政院日記」, 英祖 3年 11月 13日(乙丑).

#### 4.8 御覽

대개 初草와 中草를 하면서 校正을 가하여 御覽을 위한 正書를 한 후 粧橫하여 進上해야 하는데, 작업의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인지, 자세한 기록이 없다. 다만 11월 2일과 11월 4일에 걸쳐 중초 어람건을 담은 朱紅函,<sup>99)</sup> 彩輦 등 물품과 儀式에 필요한 香亭子, 香盒, 上馬隊, 烏杖忠贊衛, 差備忠贊衛, 宗簿寺 正門 앞 청소, 거기에 깔 行步席, 朱紅高足床, 등등 인력과 물품을 준비하였다.<sup>100)</sup> 그리고 어람 일자를 11월 6일로 잡았다.<sup>101)</sup>

중초 어람후 英祖는 甲辰年 嗣位時와 乙巳年 冊封時에 올린『璿源譜略』 內藏本은 改張만 한 것인지, 아니면 모두 새로 인출한 것인지를 李廷弼을 시켜 宗簿寺에 확인하였다. 宗簿寺에서 답하기를, 처음에는 改張하라 하셨으나 御覽件은 새로 印出하라 하였다고 보고했다.<sup>102)</sup>

여기서 ‘甲辰年 嗣位時와 乙巳年 冊封時’란 영조가 嗣位하고 世子가 冊封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영조1년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왕세자의 책봉일이 英祖 원년 2월 25일이고, 영조1년본은 英祖 원년 8월 28일에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 4.9 付板正書, 板刻, 印出

중초어람이 11월 6일인데 11월 2일에 이에 필요한 물자를 신청하면서 부관정서에 필요한 물품으로 寫字官이 쓸 黃筆 2柄, 眞墨 2丁, 糊末 4合, 方文里 2介를 신청하였다.<sup>103)</sup> 이어 11월 9일에 付板膠末 1升이 부족하다 하였다.<sup>104)</sup> 이로보아 중초어람 이후로부터 11월 9일 사이에 부관정서는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99)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9. 丁未 11月2日條.

100)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2. 丁未 11月4日條.

101)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1-12. 丁未 11月4日條.

102)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3. 丁未 11月6日條.

103)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9. 丁未 11月2日條.

104)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20. 丁未 11月9日條.

付板正書한 종이를 목판에 뒤집어 붙이고 판각을 할 터인데, 이미 10월 16일에 판각 재료로 自作板 13立과 이를 熟正할 소금, 燒木, 大釜子, 木賊 7兩을 신청해 두었고,<sup>105)</sup> 10월 19일에는 각수 13명이 쓸 臺床 5부와 臺床布 각 2尺씩 26尺 등을 미리 신청한<sup>106)</sup> 것은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위가 닥쳐 刻役이 급한데 교서관 각수가 實錄都監과 本館<sup>107)</sup>에 부역하여 남은 자가 2, 3명에 불과해서 北漢僧將에 공문을 보내어 本漢<sup>108)</sup>의 善手刻手 10명을 요청하면서 甘結이 도착하는 대로 즉시 定送하라고 하였다.<sup>109)</sup> 이 시점은 付板正書가 완료되기 약 20일 전인데, 이들 각수들의 판각한 내용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는 문제점으로 남겨둔다.

그리고 10월 29일에 「璿源譜略」 수정의 일이 매우 급하다고 校書館 刻手 10명, 觀象監 刻手 2명, 內需司 雕刻匠 2명, 尙衣院 雕刻匠 2명을 요청하고<sup>110)</sup> 北漢僧 刻手 仁好, 雙敏, 快策 3명을 요청하였고,<sup>111)</sup> 11월 5일에는 각수가 쓸 小小剪板과 각수 8명의 난방용 大爐와 炭을 신청하였는데,<sup>112)</sup> 이는 11월 6일 중초어람 이후 付板正書 후 板刻에 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월 9일에 僧刻 2명의 炊飯次 燒木, 食饌, 甘醬, 소금 등을 신청<sup>113)</sup>한 것으로 보아 僧刻들이 取食을 하면서 계속 板刻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4일부터는 印出에 대비했는데, 初再見次 厚白紙를 신청하고<sup>114)</sup> 11월

105)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4. 丁未 10月16日條.

106)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5. 丁未 10月19日條.

107) 本館은 校書館으로 추정된다.

108) 숙종 37년(1711)에 전란시 임금과 도성의 백성이 거쳐할 목적으로 北漢山城을 축조하고 僧侶兵營인 經營을 설치하여 義僧軍이 城을 수비하도록 하였는데, 僧大將 1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군사 조직을 만들고, 山城 안에 사찰을 창건하여 11개 사찰과 2개 암자가 있어서 11인의 各寺僧將을 두었다. 北漢僧將은 僧大將을 지칭하고 本漢은 北漢經營으로 추정되지만, 둘 다 확인할 수 없고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109)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6. 丁未 10月19日條.

110)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0. 丁未 10月29日條.

111)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0-11. 丁未 10月29日條.

112)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2-13. 丁未 11月5日條.

113)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4. 丁未 11月9日條.

114)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1. 丁未 11月4日條.

5일에는 黃蜜, 眞墨, 馬鬣, 尾箒를 신청하였고<sup>115)</sup> 11월 7일에는 印出匠 1牌를 요청하였다.

#### 4.10 補孔과 洗補

補孔<sup>116)</sup>이란 수정할 부분을 목판에서 제거하고 阿膠로 새 나무 조각을 붙이고 다시 판각하는 것이고, 洗補란 인출된 冊紙에서 수정할 부분을 오려내고 그 부분만 인출한 종이를 뒤쪽에서 덧붙이는 것이다.

‘45 단자수집’에서 이미 기술하였지만, 다시 말하자면 영조는 進上件만 改張하되 자신의 자손록 사항만 修改하라 한 것이 10월 12일의 일이고, 실제 작업을 해보니 行數와 張數가 차례로 밀려나서 新板이 약 30餘 板이고 小註 속의 見某字가 일치하지 않아 이의 修改까지는 허락한 것이 10월 13일이며, 자손록 중 罪死 復爵한 인물에 대하여도 고치지 말고, 심지어 한 板을 새로 판각하는 경우라도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변동사항을 고치지 말라 한 것이 10월 27일이다.

그런데 舊板의 時任大臣 小註 ‘及第’를 實際에 따라 改正하되 頒賜件을 거두어서 洗補한다면 경비와 인력에 별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尹淳이 건의한 것에 대하여 英祖가 御牒만 改張하고 다른 것을 고칠 필요가 없으며, 단지 爵秩을 고칠 만한 것은 洗補하는 것만 허락한 것이 11월 13일의 일이다. 그 날로부터 교정청에서 禁府와 吏曹와 兵曹에 丁未換局 이후<sup>117)</sup>의 罪死, 罪謫 및 處分仍置之類, 贈職, 贈諡, 削職, 復官爵 등의 人員을 파악하였다.

11월 15일에 補孔을 위해 匠人 金萬昌을 불렀고, 魚膠도 신청하였고, 11월 17일에는 補孔次 自作板 2立을 신청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은 時任大臣이 領議政 李光佐이고, 소론의 득세 속에 있어서 英祖의 뜻을 슬그머니 어기면서 소론들의 復爵 사실을 수정하려고 한 듯하다.

115)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張 12-13. 丁未 11月5日條.

116) 補空이라고도 한다.

117) 原文에서는 丙午 이후라 하였는데, 이는 영조2년본이 간행된 해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실상은 丁未換局 이후의 변동사항이다.

그러나 英祖는 진상건과 진헌건을 몇 건을 올릴 것인지에 관한 校正廳 草記를 보고 자신의 뜻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조사해보니 교정청 낭청의 대답은 洗補하라는 명령에 따라 작업을 해보니 고칠 곳이 너무 많아서 고치는 것이 新板이나 다름이 없고, 전례를 보아도 洗補가 아니라 印出하여 改張했기에 內臟하고 있는 前 板本을 내어 주시면 그 件數를 맞추어 새로 인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英祖는 다시 자손록에서 대신의 관작만 고치고 그 밖의 것은 고치지 말라고 嚴命했다.<sup>118)</sup> 이것이 11월 22일의 일이다.

英祖가 洗補하라 한 부분을 校正廳에서 改板 또는 補孔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英祖의 命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23일에 바로 提調 礪城君楫, 禮曹判書 李堧이 영조에게 謝罪 上疏를 올렸고,<sup>119)</sup> 24일에는 句管堂上 密昌君 楫이 罷職 上疏를 올렸다.<sup>1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領議政 李光佐는 소론 제신들의 追奪 기록을 復爵된 것으로 고치고 싶어서 진상일 하루 전인 25일 經筵에서 또 엄중한 譜略이라 운운하며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英祖는 그의 의견을 묵살하였다. 이에서 보면 특세한 소론 제신들이 黨習에 젖어 英祖의 권위에 몰래 도전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수정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sup>121)</sup>

- 1) 凡例 第5張
- 2) 璿源世系 第32張, 第33張
- 3) 歲字張 密豐君 小註 見如 改松<sup>122)</sup>
- 4) 律字張 朴弼隆 小註 見松 改之

118) 『承政院日記』 英祖 3年 11月 22日(甲戌).

119) 『承政院日記』 英祖 3年 11月 23日(乙亥).

120) 『承政院日記』 英祖 3年 11月 24日(丙子).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 張 25. 11월 24일조.

121)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 (奎14022) 張 30. 당시의 『璿源系譜紀略』의 자손록은 版心の 張次 외에 相互參照를 위해 欄外 上段 中央 右側에 千字文으로 張次를 표시하였다.

122) 이는 ‘歲’字가 찍힌 張의 密豐君 좌측 小註에 있는 ‘見如’를 ‘見松’으로 수정하였다는 뜻이다.

- 5) 呂字張 具萬喜 小註 見之 改盛
- 6) 調字張 宋麟孫 小註 見盛 改川
- 7) 騰字張 趙東奎 小註 見川 改流
- 8) 致字張 崔遠大 小註 見流 改不
- 9) 結字張 許沼 小註 見不 改息
- 10) 水字張 趙泰億 小註 及第 改以左議政
- 11) 岡字張 密豐君 小註 見如 改松
- 12) 號字張 李光佐 小註 及第 改以領議政
- 13) 劍字張 洪鎮輔 小註 行判書 改以右議政
- 14) 讚字張 李寔 小註 見淵 改澄
- 15) 始字張 洪重五 小註 及第 改以左議政
- 16) 豈字張 鄭俊一 小註 見暎 改容
- 17) 知字張 沈鎰 小註 行判書 改以右議政
- 18) 馨字張 新生翁主 添入함으로써 行數가 次次 推退하여 容字에 이르기까지 14張 改板.
- 19) 文字張 趙載健 小註 見澄 改取

‘凡例’ 1張, ‘璿源世系’ 2張, ‘子孫錄’ 14張, 도합 17張을 새로 板刻 印出하여 改張하고, ‘子孫錄’의 16處를 補孔 印出하여 改張하였다.

#### 4.11 完成本 進上進獻, 洗草, 撤局

中草御覽과 進上進獻에 앞서 粧纘을 해야 하지만, 이미 粧纘이 되어있는 진상 건, 진헌건, 봉안건만 改張하여 英祖 3년 11월 26일에 進上儀式을 거행하고, 그날 洗草와 撤局할 것을 趙遠命이 아뢰어 英祖의 허락을 받았다.<sup>123)</sup>

결국, 進上件으로 段衣 5件과 紙衣 10件, 進獻件으로 段衣 3건과 紙衣 7건,

123) 『承政院日記』 英祖 3年 11月 26日(戊寅).

奉安件으로 段衣 5件을 진상하였으니 段衣는 13件 紙衣는 17件으로 모두 30건만 改張하였다. 이중의 段衣 1건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유일본으로 남아 있다.

## 5. 結 言

이상에서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英祖 즉위 후 蕩平政策을 펴는 가운데 乙巳換局 후 英祖 2년에 노론측이 피화된 소론 측을 더욱 엄중히 討逆하라는 주장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12월 初旬에 「璿源系譜紀略」 영조2년본이 완성되었고, 英祖 3년 7월의 丁未換局으로 소론의 정권 하에서 英祖 3년 11월 末에 「璿源系譜紀略」 영조3년본이 완성되었다.

「璿源系譜紀略」 영조2년본은 세 王后에게 尊號와 徽號를 올린 것을 계기로 英祖 2년 11월 초순에 發意되어 英祖 2년 12월 초순에 완성되고 英祖 3년 1월 26일에 進上儀式을 마쳤는데, 영조1년본의 進上本과 進獻本만을 대상으로 ‘璿源世系’ 말미의 2張만 改張하고 발문 추가 없이 간행한 판본이다.

「璿源系譜紀略」 영조3년본은 英祖 3년 10월 5일에 발의되어 英祖 3년 11월 26일에 진상되었는데, 그 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宗簿寺 提調인 右議政 沈壽賢이 王世子の 嘉禮 후 璿源譜略 修改를 건의하여, 英祖는 進上進獻件만 改張하되 그것도 當宁의 子孫錄만 修改하도록 했는데, 주된 수정내용은 王世子の 入學, 冠禮, 表德과 嬪宮의 冊封年紀, 誕生年月日干支 및 坊名, 新生翁主 生母의 爵號였다.

英祖 3년 10월 18일 校正廳을 설정했고, 종부시 提調는 右議政 沈壽賢, 礪城君 楫, 禮曹判書 李堧이었다. 그 중 가장 실무적 責任者는 礪城君 楫이고, 旬管堂上은 密昌君 楫, 校正官는 西城都正 焯과 行韓豐副正 杵이었다.

동절기에 대비하여 약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8條의 應行節目을 마련한 후 王世子, 世子嬪과 그의 父親, 新生翁主와 그의 生母 爵號, 子孫錄 중 신분변동자의 단자를 수집하면서 初草, 中草하고 御覽을 거쳐 付板正書하여 판각했고, 발문은

짓지 않기로 하였다.

子孫錄에 대한 補孔은 불허하고, 洗補는 英祖의 의도로는 소폭 허락하였으나, 소론 諸臣들의 黨習으로 소론 측의 기록을 대폭 改板 또는 補孔하려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지한 英祖는 다시 大臣의 官爵만 修正하라 하였기 때문에 復爵, 罪謫 등의 기록을 수집하고도 다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약 1개월 반을 소요하여 1) 建議와 許諾, 2) 校正廳 設廳, 3) 責任者 選拔, 4) 應行節目 마련, 5) 單子收集, 6) 施設補修, 7) 初草, 8) 中草, 9) 御覽正書, 10) 御覽, 11) 付板正書, 12) 板刻, 13) 印出, 14) 完成本 進上進獻, 15) 洗草, 16) 撤局 등의 過程을 거쳤다. 凡例 第5張과 璿源世系 第32張, 第33張 외에 16處의 補孔, 新生翁主 添入에 따라 뒤로 밀리는 14張을 改板하여, 進上件 段衣 5件과 紙衣 10件, 進獻件 段衣 3건과 紙衣 7건, 奉安件 段衣 5件을 진상한 후 洗草, 撤局하였다. 이 중의 段衣 1건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유일본으로 남아 있다.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璿源系譜紀略』宗簿寺編, 昭和7年(1932)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丁未年 璿源譜略修改時儀軌』(奎14022)

이성무. 『조선당쟁사 2』. 동방미디어, 2000.

윤인현. “景宗朝 『璿源系譜紀略』 板本考,” 『杏簡尹泳大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97. 11).

윤인현. “『璿源系譜紀略』 英祖1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第48輯(2011. 6). 289-316.